

	<h2>경민안전관리센터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1-49
		제정일자	2026. 3. 1.
		개정일자	-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경민안전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과 지역의 안전관리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,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사업 추진 체계

제3조(사업추진체계) ① 본 센터는 지산학사업단에 두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센터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 3 장 역 할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사업의 수행
- 2.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3.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안전관리 용역 수탁
- 4. 국내외 타 연구기관,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
- 5. 기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과 관련한 사업의 수행

제 4 장 위 원 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지산학사업단의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.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, 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지산학사업단의 자체평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.

제 5 장 재 정 및 기 타

제7조(재정)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본 대학교 교비 및 산학협력단비, 정부 기관의 국고보조금, 지자체의 사업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8조(보안) 센터 업무와 관련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